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2543-2015-004389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2-5 자이드림빌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5년11월18일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2-5 자이드림빌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4길 14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-단지형다세대 1층 12.15㎡ 2층 96.67㎡ 3층 96.67㎡ 4층 96.67㎡ 5층 90.05㎡ 옥탑1층 12.15㎡ (연면적제외)	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2-5	대	197.4㎡	2015년11월18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15년11월18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구조 54.57㎡	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 소유권대지권	197.4분의 32.50	2015년11월16일 대지권 2015년11월18일 등기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2-5 자이드림빌 제4층 제401호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	별도등기 있음 1토지(을구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) 2015년11월18일 등기
3			2번 별도등기 말소 2016년2월11일 등기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	소유권보존	2015년11월18일 제108663호		소유자 송지영 690124-*****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2길 15-1, 201호 (봉천동)
2	소유권이전	2016년2월11일 제8386호	2015년12월18일 매매	소유자 중국인 김정순 660502-*****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58-6, 201호 (구로동) 거래가액 금279,000,000원
3	소유권이전	2016년2월11일 제8387호	2016년2월11일 신탁	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110111-1492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 (삼성동,아셈타워)
	신탁			신탁원부 제2016-151호
4	압류	2020년1월7일 제3924호	2019년12월17일 압류(새이 12-1 7)	관리자 금천구(서울특별시) 1135
5	4번압류등기말소	2020년1월14일 제9778호	2020년1월14일 해제	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열람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gaps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2543-2015-004389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2-5 자이드림빌 제4층 제4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압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(수탁자)	110111-1492513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 (삼성동, 아셈타워)	3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압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